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38
----------	------

제출년월일 : 2012. 10.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관리요원 배치, 주민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대비계획 수립(안 제4조)

- 시장은 매년 4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나. 안전시설 정비·확충(안 제5조)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위험표지판, 인명 구조함, 구명환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함.

다.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안 제9조)

-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라. 대응계획 수립(안 제19조)

- 시장은 매년 5월까지 전담반 구성, 휴일 비상 근무실시, 상황 보고체계 및 협조체계 구축, 주민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마. 안전시설 설치비(안 제25조)

-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정비·확충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바. 홍보(안 제27조)

- 시장은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

(과태료 부과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2. 08. 22 ~ 09. 1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대상 : 검토완료

(3) 제안부서 의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시설 정비·확충, 주민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나 시설로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라 한다)란 수영, 보트 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다슬기 채취 등), 도강(渡江), 실족(失足)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제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이하 "안전 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 관리 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사전대비 계획과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 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4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사고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와 위험구역 설정 · 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 확충 계획
3. 안전 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 · 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 관리 대책기간 전 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과 위험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 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 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구명부표 · 구명밧줄(투척밧줄) · 구명조끼를 갖춰 놓은 이동식 거치대
 3.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5. 그 밖에 인명구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물놀이 안전 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안전시설은 가능한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 시설을 전수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험구역 설정 · 게시) ① 시장은 시민을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추가로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과 수영을 금지하는 등 그 밖의 위험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2회 퇴거예고 후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

- 제8조(안전 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에서 신속하게 인명이 구조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 관리요원을 확보 ·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 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 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와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 등

제3장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의 배치 · 운영

- 제9조(안전 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 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와 지

역여건에 따라 배치하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 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 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 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 인명피해 기 발생지역과 피해 우려가 큰 지역 : 고정배치
2. 위험구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 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 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 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관리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 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살펴보기
2. 인명 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와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복제) ① 시장은 안전 관리요원에게 근무복과 안전장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과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 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 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안전 관리요원으로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과 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 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 생명·보건 대학에서 수상구조·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 관리요원 대상을 모집·선발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과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하거나 위촉한 안전 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구명부표, 구명밧줄(투척밧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 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 ② 교육과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수상구조전문 훈련기관, 물놀이 안전관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시행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한 안전 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안전 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전담반 구성·운영
2. 휴일 비상근무와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 체계
4.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과 안전 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0조(휴일 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 관리 대책기간에 휴일 비상근무자와 순찰 근무자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나 순찰 근무자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내용을 충청북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기상상태, 인명피해와 인적사항, 사고원인과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즉시 보고한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22조에 따라 현장을 조사할 때 사전에 조사한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은 비공개로 처리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과 흥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과 위험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 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 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와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과 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스마트폰
4. 트위터, 아고라 등 인터넷 기반 SNS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
7. 차량이용 방송
8. 민방위 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 시설등"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6. 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7.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 8. 4>

-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개정 2010.8.4>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89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령	부 과 금 액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명령 위반 가.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위반 가. 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나. 응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 내에서 퇴거 또는 대피명령 위반 가. 위험구역 내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위험구역 내의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 위험구역 내의 대피·퇴거명령을 방해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 질서행위위반 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11. 7. 6>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제정안은 물놀이 안전시설의 정비·확충(안 제5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안 제9조)에 따른 비용 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정안이 의결될 경우 원활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각종 시설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 (연 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에 해당된다.

3. 미첨부 사유

제정안에 따른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안전요원의 배치 등 물놀이 관리지역 5개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비용 추계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경제건설국 재난관리과장 정경화